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입법동향 – 2024 - 제3호

#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전국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차 례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 1
2.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4
3.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 8

##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 행정자치위원회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1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20

### □ 환경복지위원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4

### □ 농산업경제위원회

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26
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7

###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29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2

### □ 교육위원회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5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7

# 차 례


##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 39

## Ⅳ. 법령 해석 사례

1.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 46
2.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 ····· 51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55
2.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59

##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멀티테크노벨리 내부도로 포장공사 사업자 선정 등 관련 감사 제보사항 ····· 63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0.] [경기도조례 제7904호, 2024. 1. 10., 제정]

### 1. 제정이유

경기도 내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긴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

###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통합운영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절차】**

① **(긴급차량)** 출동 경로 경기도에 보고

② **(경기도)** 접수된 정보를 시·군에 제공

③ **(시·군)** 긴급차량 운행속도에 맞춰 신호 변경

④ **(시·군)** 경기도에 신호변경 결과 보고

⑤ **(경기도)** 긴급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 신호 변경 알림

#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 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
2. **“우선신호시스템” 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하 “우선신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신호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2. 시군간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의 관계기관 연계 구축**
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4.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를 위한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통신호 연계**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시설물을 포함하여 시군간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신호제어기의 최적상태 유지·관리 및 표준규격 준수

2. 시군 교통정보센터와 교통신호제어기간 통신 온라인 구축·운영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을 광역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는 시군 교통정보센터 또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술적 오류 등 장애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홍보를 통해 도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이 도 내에서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관리·운영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되는 우선신호시스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도 내 및 인접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4. 3. 20.] [경기도조례 제7927호, 2024. 3. 20., 제정]

## 1. 제정이유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체육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 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방법·시기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체육인 기회소득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24. 2. 22.] [경상북도조례 제5013호, 2024. 2. 22., 제정]

## 1. 제정이유

**현재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경북지역의 2/3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인 상황**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경북의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경북교육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교육지원계획 수립】**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 사업
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경상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3년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
3.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가정의 학생 지원사업
4.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과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 행정자치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3. 3.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

◇ **개정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장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하여 이 법과 **「자동차관리법」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중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를 “보험에”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40조제2호”를 “제51조제2호”로 한다.

제40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5장(제40조부터 제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이하 "형식"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위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하 "운행가능영역 확인"이라 한다)하고 **안전운행 성능에 대한 시험**(이하 "안전운행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기준·대상·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운행하려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기상·통신 등 운행 환경과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또는 기간을 붙일 수 있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적합성 승인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 · 용도 및 범위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⑥ 적합성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기준 ·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제46조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變造)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④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이하 “안전운행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운행 조치 이행 의무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함과 그 공개 및 시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및 같은 법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전단에 따른 정보 및 자료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장, 기능장애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등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5. 제5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성능인증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41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6장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현황조사 정보

2.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성능인증에 관한 정보

4.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정보

5. 제4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와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은 정보 및 자료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종전의 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인증의 취소

4. 적합성 승인의 취소

제53조(종전의 제42조) 중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성능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적합성 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54조(종전의 제4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54조(종전의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9조를”을 “제19조 또는 제43조제1항을”로, “책임보험에”를 “보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42조제2항·제3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종전의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하여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검사에 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근태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3-11~2024-03-20)

## ◇ 제안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갈수록 척박해지는 **국내 연구환경으로 인하여 이공계 인재의 해외로의 두뇌 유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의 숫자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52명 늘어난 9,392명을 기록하였고,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4만 명에 달하는 **이공계 학생이 해외로 유출**되었음.

특히,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다수 학생연구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연구환경과 지원의 편차도 지도교수의 성향 및 연구실 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바 있음.

반면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Stipend 제도를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이에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Stipend’**,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 Stipend: 봉급, 급료

## ◇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학생**이

**연구생활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 ·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4년 이상 지난 지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최초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최초로 재검토한 날부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 학생에 대한 연구생활장학금)**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학생이 연구생활장학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생활장학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환경복지위원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9호, 2024. 2. 6.,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8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표의 세부적 사항을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처벌의 경우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의 경우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중앙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개정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별표 4 중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부 칙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위반사실 공표)** 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형연의원 등 13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3-13~2024-03-22)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예방사업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을 추가**하고, **암검진사업의 의미**를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으로 확대함**. 제30조제11호 및 제46조제7호의2 신설 등).

◇ **개정문**

제10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제11조제1항 중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을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암관리법」**

**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6. 그 밖에 암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농산업경제위원회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2호, 2024. 2. 27., 제정]

###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가상융합산업: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

###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다.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 ·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상융합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 통신 · 보안 · 호환성 · 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차.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1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2-19~2024-03-0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 성장 견인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 ◇ 개정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진흥원”을 “진흥원(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권역별로 분원**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2. 1.] [고용노동부령 제3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481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자격요건**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은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여 학예사의 자격요건 인정과 관련된 실무상 혼란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개정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를 포함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인력, 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별표 1의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3급 정학예사 |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1의 **준학예사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포함한다)하고”를 “포함한다)한 후”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포함한다)하고”를 “포함한다)한 후”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포함한다)하고”를 “포함한다)한 후”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별표 1】

| | |
|---|---|
| 3급 정학예사 |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br>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4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03-11~2024-03-20)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결정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개정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나 **도시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5년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4년 이상 지난 지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최초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최초로 재검토한 날부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 8. 16. 시행]**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나 도시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5년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교육위원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2. 28.] [법률 제20351호, 2024. 2. 27., 일부개정]

### ◇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 개정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를 “제9항까지의”로 한다.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1.~11.. (현행과 같음)

11의2.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의원 외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4-3-12~2024-3-21)

##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침해행위 유형**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민원을 방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통한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2호나목 신설).

## ◇ 주요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활동”을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 · 면담 · 민원처리 · 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를 “교원의 교육활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신고 · 고소 · 고발 ·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의 청구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02호, 통권 제240호, 강명원)**

● 최근 통계청 보도자료(2024. 2. 28.)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잠정 25만 명,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국 평균 합계 출산율 1.58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세제·복지 등의 혜택을 **법률혼 부부에게만 집중하는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한 부부에게 현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정책**과 함께 **새로운 가족제도를 인정하여 법률혼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회에서도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S)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의 하나로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를 「민법」 내에 규정하여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PACS는 동거 부부도 등록을 통해 법률혼 부부와 같은 세제, 사회보장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차후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등록 동거혼' 관련 규정 신설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 동성 혹은 이성 간의 시민 결합 제도

## □ 도입

2023년 5월 28일 **국제 신용평가 무디스 발표에 따르면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위험은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83년 처음으로 OECD 평균 2.11명보다 낮은 2.0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 현항(2.1명 미만)이 나타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1990년∽2021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 연도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2021 |
|---|---|---|---|---|---|---|---|---|
| 한국 | 1.57 | 1.63 | 1.48 | 1.09 | 1.23 | 1.24 | 0.84 | 0.81 |
| OECD 국가평균 | 1.98 | 1.77 | 1.7 | 1.67 | 1.75 | 1.68 | 1.56 | 1.58 |

출처: OECD, Family Database, 21 Feb 2024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 사교육비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와 비혼 출산을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로 인해 출산·육아 관련 혜택 대상을 **법률혼 부부로 한정하는 정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양육·보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가족제도 중 하나인 **‘등록 동거혼’ 제도를 내부과제로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다산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는 1993년 합계출산율이 1.65명까지 급락하자, 1999년에 **동거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족제도인 시민연대계약(PACS)에 관한 규정**(제515-1∽제515-7-1조)**을 「민법」 내에 추가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 □ 프랑스의 가족제도

**프랑스**는 1999년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시만연대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시민연대계약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제도를** 혼인(법률혼), 동거(사실혼), 시민연대계약 등 **총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가족제도의 법적 근거 및 특징】**

| 구분 | 혼인(법률혼) Mariage | 비(非) 법률혼 | |
|---|---|---|---|
| | | 시민연대계약(PACS) | 동거(사실혼) Concubinage |
| 규정 | 「민법」 제143조 이하 | 「민법」 제515-1조 이하 | 「민법」 제515-8조 이하 |
| 도입연도 | 1791년 「헌법」[8] 1804년(나폴레옹법전) | 1999년 (2006년, 2016년 개정) | 1999년 |
| 신고 여부 | 신고 ○ | 신고 ○ | 신고 X |
| 출산·양육수당 | 출산, 양육수당 혜택 | | |
| 휴가권 | 배우자와 동시에 휴가 신청 가능 | | 동시 휴가권 없음 |
| 소득세, 부채, 사회보장급여 | 연대납세 혜택<br>연대채무 책임<br>사회보장급여 인정 | | 각자 소득신고<br>각자 채무 책임<br>건강보험만 배우자에게 적용 |
| 재산 | 부부 공유제 | 부부별산제[9] | 명의에 따라 완전히 독립된 개인재산 |
| |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처분 불가 | 상대방 동의 없이 본인 명의 재산처분 가능 | |
| 상속권 | 상속권 인정 | 상속권 불인정 (유언, 증서가 있을 시 상속 인정) | 상속권 불인정 |
| 유족연금 | 유족연금 인정 | 유족연금 불인정 | |
| 위자료 규정 | 위자료 규정 있음 | 위자료 규정 없음 | |
| 건수[10] (2022년) | 241,710건 | 209,827건 | 통계 없음* |
| 출생아 수* (2022년)[11] | 총 출생아 수 725,997명(100%) | | |
| | 252,647명 (34.8%) | 473,350명 (65.2%) | |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신고 의무가 없는 동거(사실혼)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출생아 수 통계 시 혼인(법률혼)과 비(非) 법률혼으로만 나누어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프랑스 민법 규정 및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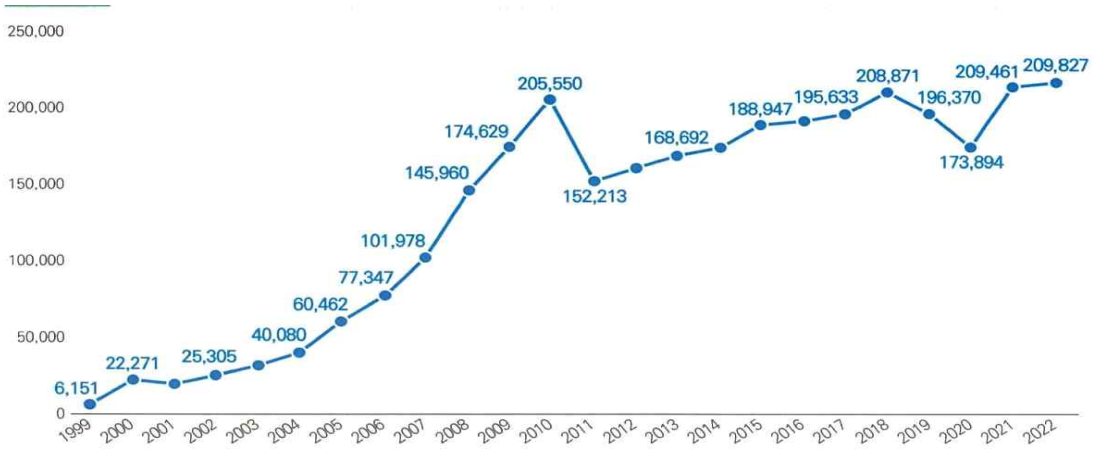
### 1. 시민연대계약 체결

**시민연대계약**이란, **성별이 다르거나 같은 두 성인이 공동의 삶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성년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515-1조).

- 단,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 직계와의 인척이거나 3촌 이내 사이, 양당사자 중 적어도 1인이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와 양 당사자 중 적어도 1인이 이미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시민연대계약은 무효이다(민법 제515-2조).

**【프랑스의 연간 PACS 체결 건수(1999년~2022년)】**




* 출처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인구통계보고서 26 janv. 2024[12]

-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는 공동거주지의 시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함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당사자가 시청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 시청직원의 당사자 주거지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민법 제515-3조 제1항 및 제2항).

-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출생증명서(Acte de naissance) 여백 부분에는 상대방의 신원정보와 함께 시민연대계약 선언(Déclaration de PACS)이 표기된다(민법 제515-3-1조 제1항).

- 시민연대계약은 등록된 시점부터 양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변경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민법 제515-3-1조 제2항).

출처: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인구통계보고서 26 janv. 2024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여백 부분에는 상대방의 신원정보와 함께 시민연대계약 선언이 표기된다(민법 제515-3-1조 제1항).

시민연대계약은 **등록된 시점부터 양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변경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민법 제515-3-1조 제2항).

【시민연대계약(PACS) 체결과정 및 필요서류】




* 출처 : 프랑스 모흐쿠흐(Morcourt) 시(市) 홈페이지, 2024.3.12.

## 2. 시민연대계약 당사자의 의무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의 삶의 의무**를 가진다(민법 제515-1조). 프랑스 헌법재판소 1999년 11월 9일 제99-419호 결정에 따르면 공동의 삶이란, 공동거주지에서 같이 살며 부부처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폭력 행위가 있는 경우 공동의 삶의 의무에 대한 면제가 인정된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정조의 의무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 1999년 11월 9일 제99-419호 결정에서 「민법」 제515-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삶의 의무에는 정조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프랑스는 2006년 **「민법」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였다. 즉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함께 생활하며 상호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여야 한다.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물질적 지원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15-4조 제1항).

**시민연대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일상생활비 목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채무는 명백히 과도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15-4조 제2항).

- 예외적으로 시민연대계약 각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재산에 대해 단독으로 관리권과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비 용도로 부담한 채무 외에 계약 이전 또는 계약 중에 발생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민법 제515-5조 제1항).

### 3. 시민연대계약의 변경

시민연대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변경은 시민연대계약이 유지되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 계약변경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는 계약의무(공동의 삶 의무, 부양의무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민연대계약 변경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① 공증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 ② 공증인 입회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변경계약서에는 최초 계약사항(번호 및 등록일), 계약변경 일자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연대계약의 당사자는 변경계약서에 계약변경 공동선언서(국가표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공동선언서에는 양 당사자의 신원정보와 최초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다.

시민연대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변경 내용을 등록하기 위해 담당 시청직원 또는 공증인에게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서는 등록과 동시에 양 당사자 간에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15-3조 제6항).

### 4. 시민연대계약의 해지

시민연대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이나 **양 당사자 중 일방의 법률혼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 공동의 PACS 해지 신고가 있거나 당사자 중 1인의 일방적 결정으로도 해지**될 수 있다(민법 제515-7조 제1항 및 제3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양 당사자는 계약해지 신고서를 등록지 담당 시청직원에게 제출하거나 공증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민법 제515-7조 제4항).

## □ 시사점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는 의사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 두 명이 동거계약을 체결한 후 시청에 신고만 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정부로부터 출산 및 아동 양육수당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1인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지할 수 있고, 법적인 기록도 남지 않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 당사자 사이에는 어떠한 친·인척 관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 유족 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자녀는 부와 모의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권을 가진다.**

자녀에 대한 친권과 관련하여 혼인(법률혼), 비법률혼 모두 모(母)는 친권자가 된다. 다만, 혼인을 한 부(父)는 자녀가 태어날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친권자가 되지만, 시민연대계약(PACS)을 체결한 부는 임의인지(유전자 검사 등)나 법원에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문제와 **동거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차후 '동거혼' 제도 도입 논의 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가족제도를 법률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Ⅳ. 법령 해석 사례

# Ⅳ 법령 해석 사례

## 1.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허가 범위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의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23-1130, 2024. 1. 22., 민원인]

###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함)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함)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함)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해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집단위별 **수업연한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 【회답】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 【이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대학의 장은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령에서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처럼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정원의 범위’가 아닌**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8조제3항에서는 대학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인 등의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학’은 일반적으로 특정 학년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으로서, 매 년 또는 매 학기 단위 일정으로 운영되는 학사 행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

**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개별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장관은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등교육법령상의 '입학'은 개별 학년도별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같은 영 제29조제3항에서 **대학의 장은** 같은 영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되**(본문),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단서), 여기에서 **"그 입학정원"은 모집단위를 옮기려고 하는 학생이 속한 학년과 "같은 학년"에 해당하는 의료인 양성 관련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 단서를 비롯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라는 용어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의 입학정원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모집단위별 수업연한에 따른 전체 학년의 입학정원'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는 **2006년 1월 13일 대통령령 제19278호로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제적 후 재입학을 원하는 자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학사 운영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대학의 장이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두어 같은 영 제28조제1항 · 제3항 ·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만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제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보건 정책,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의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그 허가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학의 일반적인 재입학 허가와 관련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허가 범위를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로 보다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 5. (생 략)

④·⑤ (생 략)

**제29조의2(재입학)**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 2.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법제처 23-1168, 2024. 3. 12., 순천시]

※**환매권**: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舊)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질의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11월 26일 해당 규정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 행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환매권 행사기간"이라 함)을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환매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0년 11월 26일 전에 이미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는 **신·구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일인 **2021년 8월 10일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인 **'취득일부터 10년'의 기간은 법률에 정하여진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0년 11월 26일 전에 이미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개정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1월 26일 전에 **이미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으로서, 그 개선 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 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 법률에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2020년 11월 26일 전에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개정 토지보상법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인 '취득일부터 10년'을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소급적으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형벌 규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의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가 급증**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과 같이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및 부칙 제3조가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그 환매권 행사기간에 관해서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② ~ ⑥ (생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3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의견24-0047, 2024. 3. 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조례의 규정 범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장애인 거주시설(제1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10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2호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군수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군의 자치사무**로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철원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하 "철원군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제2조제3항), 철원군조례안 제6조제1항의 규정

취지는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8제2호),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장애인복지법」 제61조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점검에 관한 권한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 할 것이고, **그 권한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의 실시 여부, 점검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철원군조례안**에서는 **군수에게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지도·감독의 실시 여부, 횟수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원군조례안 제6조제1항과 같이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법 제59조의10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2.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의견24-0059, 2024. 2. 23., 전라남도 무안군]

### 【질의요지】

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받은 자에 대해** 그 다음번 해당 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받은 자**에 대해 그 다음번 해당 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이나 위임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재위탁 횟수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기준 등에 대한 공고 의무(제1항), 위탁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제2항), 위탁 시에 필요한 보육정책위원회 등 심의절차(제4항 및 제6항),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제7항)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제9항)**,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에 관한 사항은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현황이나 운영실태,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횟수 등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 기존 수탁자에게 연속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라목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를 같은 **목 1)부터 4)까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해당 **네 가지 제한 사유의 하나**로 **종전 위탁운영 이력이나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그 밖의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바**, 조례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받은 자**에 대해 **그 다음번** 해당 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받은 자에 대해 그 다음번 **해당 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 ⑥ (생 략)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내부도로 포장공사 사업자 선정 등 관련 감사 제보사항

-감사원 감사보고서(2024. 2.)-

## 제1장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감사원 훈령)에 따라 감사제보 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 2. 14.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에서 고성과자 성과급을 걷어 저성과자에게 부당 재배분**하고 있다는 내용과 2023. 4. 11.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처에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내부도로 포장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와 다르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감사제보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접수된 감사제보 내용에 따라 **성과급 재배분 경위**와 **사업자 선정 공고 절차 및 업체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2023. 7. 17.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자료수집을 하면서 제보내용 관련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거나 각 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등으로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성과급 재배분 행위 및 불필요한 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23. 9. 4.부터 같은 해 9. 15.까지 10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23. 9. 15. 등에 서면으로 감사 마감회의를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 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1. 11.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제2장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 구분 | 합계 | 주의 | 통보 |
|---|---|---|---|
| 건수 | 3 | 2 | 1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성과급 부당 재배분 환수규정 마련 업무 소홀 등**

○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최고-최저등급 간 성과급 차등은 2배 이상**으로 하고, **성과급을 재배분할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

○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 ㉮부는** 노조 사무국장이 성과급 환수 조항 규정화에 반대하자 사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임의 판단하고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사규가 아닌 경영평가편람에만 반영**한 결과, **공사 노조에서 성과급을 계속 재배분**함에 따라 성과급 차등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등 **성과급제도의 취지를 훼손**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년 6월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만 하고 규정화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2023년 9월 81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에서 노조의 반대 등으로 사규에 미반영하고 있는 등 **예산지침의 실효성 저해**

□ **신기술·특허공법 부당공고 및 다시 공모하는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하여 경쟁 제한**

○ **소음저감시설 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자재)의 공모**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라 한다) **제출을 입찰참가 자격조건으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처**는 표준 서식에 예시된 **직생증명서 문구 그대로 기재하여 잘못 공고**하였고, 이후 입찰서류를 검토하면서 이 건 공모가 **직생증명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

○ 그 결과 **직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어 **직생증명서를 제출한 다른 사업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저소음 포장공법에 관한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 제한**

이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는 등 성과급제도가 실효성 없이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신기술·특허를 요구하는 공모 시 필요하지 않은 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가. 성과급 부당 재배분 환수규정 마련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조 치 기 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1)(이하 “예산지침”이라 한다) Ⅱ. ‘주요 항목별 지침’ ‘인건비’ 및 공사 내규 「보수규정」 제15조, 「내부경영평가 편람」 등에 따라 **정부 경영실적 평가**와 **내부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소속직원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그 지급률과 성과평가 반영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공사의 직급별 성과급 차등 지급률 등**

(단위: %)

| 직급 구분 | 등급별 차등 지급률 | | | | | | 성과평가 반영기준 |
|---|---|---|---|---|---|---|---|
| | S | A | B | C | D | E | |
| 3급 이상 | 133.4 | 116.7 | 100 | 83.3 | 66.6 | 미지급 | 부서평가 80, 개인평가 20 |
| 4급 이하 | 135 | 117.5 | 100 | 82.5 | 65 | 미지급 | 부서평가 100 |

그리고 공사는 2022. 7. 15. 성과급 8,518백만 원을 소속직원(3급 이상 221명, 4급 이하 1,564명)에게 차등 지급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급 계 20,54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의 차등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7항에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 등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차등 지급 수준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지침부터** ‘각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이하 “성과급 환수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매년 예산지침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이하 공사 노조”라 한다) 간 체결된 「단체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공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노조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규를 제정 또는 개폐하거나 노조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소속직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는 등 성과급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원에서 공사 노조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고성과자(성과평가 S·A등급) 성과급을 받아 저성과자(성과평가 C·D등급)에게 보전(이하 “성과급 재배분”이라 한다)하고 있다는 제보사항을 토대로 감사기간(2023. 9. 4.~9. 15.) 동안 성과급 지급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가. 성과급 재배분에 관한 사항

**공사 노조**는 2013년경(날짜 모름)부터 공사 노조가 소속된 ㉮ 노동조합으로

부터 **노조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과급의 재분배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의견서를 받은 후 노조위원장 선거 공약 등에 따라 **성과급을 재배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사 노조는 **2020년 이후에도 매년 소속 노조 직원**(㉱실 직원 등을 제외하고 4급 이하 전 직원은 채용발령일부터 노조원이 됨)**들이 공사로부터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은 후에 성과급의 일부 반납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결제원 CMS(Cash Management Service)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받고 대상 **직원별 성과급 일부 반납 금액을 산정**한 후, 직원들 급여(성과급)계좌로부터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해당 금액을 노조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배분 **대상 직원(성과평가 C·D등급)에게 재배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급 재배분 인원 및 금액 등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2022년의 경우 비조합원(28명) 및 B등급 평가자(497명)를 제외한 재배분 대상자 938명 중 912명이 참여(재배분 동의율 97%)하였고 S, A등급 455명에게서 계 233,730천 원을 반납받아 C, D등급 457명에게 계 233,890천 원을 배분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연도 평균 1인당 501천 원을 반납받고 527천 원을 배분**하였다.

**【표 2】 성과급 재배분 인원 및 금액 등 현황**

(단위: 명, 천 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3개년도 평균 |
|---|---|---|---|---|
| 반납 인원(S, A등급)(A) | 388 | 399 | 455 | 414 |
| 반납 금액(①) | 184,815 | 203,939 | 233,730 | 207,495 |
| 1인당 반납액 | 388 | 399 | 455 | 414 |
| 배분 인원(C, D등급)(B) | 184,815 | 203,939 | 233,730 | 207,495 |
| 배분 금액(②) | 476 | 511 | 514 | 501 |
| 1인당 배분액 | 317 | 409 | 457 | 394 |
| 성과급 재배분 동의자(C=A+B) | 184,671 | 204,340 | 233,890 | 207,634 |
| 재배분 미동의자(D) | 583 | 500 | 512 | 527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3개년도 평균 |
|---|---|---|---|---|
| 대상자 소계(E=C+D) | 705 | 808 | 912 | 808 |
| 재배분 동의 비율(C/E) | 24 | 26 | 26 | 25 |
| 재배분 미참여자 | 729 | 834 | 938 | 833 |
| 비조합원 | 97 | 97 | 97 | 97 |
| B등급 평가자 | 606 | 592 | 525 | 574 |
| 재배분 수수료 | 30 | 30 | 28 | 29 |
| 반납 대비 지급액 등 차액 | 576 | 562 | 497 | 545 |

**나. 성과급 환수규정의 사규 반영 업무 소홀**

한편, 공사는 2016. 11. 23. **노조와의 소통창구를 ㉮부로 일원화하는 공문**(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요구되는 현안 사안 발생 시 반드시 ㉮부와 사전 협의 후에 노조를 방문)을 **각 부서에 시행**하였고, 「단체협약서」 제76조 등에 따라 임금제도 개선, 노무관리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경영진과 노조 간의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에 공사가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및 「단체협약서」에 따라 성과급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등 성과급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공사 ㉮부(부장 A)는** 2020년 6월경 기획재정부 **㉰과로부터** 업무네트워크 시스템문서를 통해 ‘2020년도 예산지침(인건비 내 성과급 관련 규정) 반영 및 임원 퇴직금 기준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보(2020. 6. 5.)받은 **㉯부로 부터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받았다.

그런데 **㉮부는** 2020년 7월경 노조 사무실에서 제13대 **노조 사무국장(B)과만 수차례 만나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반영하는 것에 협의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사무국장이** 협의해 주기 어렵다고 **반대**하자 **사규 반영이 어렵다고 임의판단**하고 기관장 보고 및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안건 상정절차 없이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사규가 아닌 **「내부경영평가 편람」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한다' 고 **반영하였으나** 위 편람은 공사 「취업규칙」 제5조, 「인사규정」 제61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 정관, 업무규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속력이 없으므로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4급 이하 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부서별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S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D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차등 지급하여 3개 연도(2020~2022년) 가중평균 차등 배수가 1.91배로 유지되었으나 성과급 재배분을 통해 [표 3]과 같이 S등급이 4,797천 원에서 4,052천 원으로 줄어들고 D등급은 2,517천 원에서 3,287천 원으로 증가하여 **S-D등급 간 차등 배수가 1.23배로 하락하는 등 성과급제도의 시행 취지에 역행**하고 있었다.

**【표 3】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배분 전·후 성과급 지급액 및 차등 배수 변화**

(단위: 천 원)

| 등급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3개 연도 가중평균 | 차등배수 (S-D등급) |
|---|---|---|---|---|---|---|
| S | 배분 전 | 4,725 | 4,488 | 5,157 | 4,797 | 1.91배 |
| | 배분 후 | 4,083 | 3,732 | 4,368 | 4,052 | 1.23배 |
| D | 배분 전 | 2,579 | 2,329 | 2,623 | 2,517 | - |
| | 배분 후 | 3,438 | 3,086 | 3,351 | 3,287 | - |

자료: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하여 성과급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노조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로 규정화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앞으로 노동조합과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성과급을 환수하게 하는 규정을 사규로 마련**하는 등 성과급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나. 성과급 환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방안 마련 필요**

**소 관 기 관: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기획재정부**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고,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되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이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1. ‘경영관리 범주’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서 예산운용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하 “예산지침 준수 평가항목”이라 한다)을 비계량 1.5점의 배점으로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 수준은 최고등급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7항에서도 전체 인건비 중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고 개인별 차등 지급 수준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예산지침부터 '각 기관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소속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하 "성과급 환수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경영실적평가 시 예산지침 준수 평가항목은 비계량 1.5점의 배점으로 예산지침,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의 준수 및 편성·집행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예산지침에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예산편성·집행 관련 외부 지적사항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만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차등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이하 "성과급 재배분"이라 한다) 등 **성과급 제도가 부당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예산지침에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의 마련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급 환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 시 예산지침 준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감점 등)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고성과자(성과평가 S, A등급) 성과급을 받아 저성과자(성과평가 C, D등급)에게 보전하는 행위가 있다는 제보사항을 토대로 감사기간(2023. 9. 4.~9. 15.)동안 성과급 지급 및 경영실적 평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노조의 반대로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채** [표]와 같이 **2022년의 경우 S·A등급 455명에게서 233,730천 원을 반납받아 C·D등급 457명에게 233,890천 원을 배분**함에 따라 **성과급 차등(S-D등급 간) 배수가 1.97배에서 1.30배로 하락하는 등 정부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고** 예산지침에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경영실적 보고서에 정부 예산·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등으로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경영실적 평가에서 **해당 항목을 준수하였다고 만점(1.5점)을 받았다**.

**【표】 한국가스안전공사 성과급 재배분 금액 등 현황**

(단위: 명, 천 원)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반납 인원(S, A등급) | 388 | 399 | 455 |
| 반납 금액 | 184,815 | 203,939 | 233,730 |
| 인당 반납액 | 476 | 511 | 514 |
| 배분 인원(C, D등급) | 317 | 409 | 457 |
| 배분 금액 | 184,671 | 204,340 | 233,890 |
| 인당 배분액 | 583 | 500 | 512 |
| S-D등급 차등 배수(배분 전) | 1.83배 | 1.93배 | 1.97배 |
| S-D등급 차등 배수(배분 후) | 1.37배 | 1.21배 | 1.30배 |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사원에서 2023. 9. 15. 기준 공기업 36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45개 기관 계 81개 기관에 대해 예산지침에 따라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미반영한

기관 현황”과 같이 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기관은 노조와 협의하였으나 규정 마련에 대해 노조에서 반대하여 규정화하지 못하였고,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등 14개 기관은 노조와도 협의한 적 없이 사규에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2017년 예산지침을 시행한 이후 **2023년 9월 현재까지 81개 기관 중 28개 기관에서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0. 6. 5. 공공기관 업무네트워크 시스템문서를 통해 성과급 환수규정 반영 여부 등 실태만 간단히 보고하도록 한 후 규정 미반영 공공기관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별도로 검토·시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 시 예산지침 준수 평가항목에서 포괄적으로 평가(비계량)하고 있어 감점등 성과급 환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로 규정화하여 성과급 재배분 등 성과급 제도가 부당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예산지침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재배분하는 등 성과급 제도가 부당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예산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사규에 성과급 환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되 예산지침 또는 경영평가편람 등에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급 환수규정을 사규에 마련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연번 | 구분 | 유형 | 공공기관 | 미반영 사유 | 노동조합 협의 여부 |
|---|---|---|---|---|---|
| 1 | 공기업 | 에너지 | 한국가스공사 | 노동조합에서 규정 반대 | 2018년부터 협의 |
| 2 | 공기업 | 에너지 | 한국남동 발전 | 노동조합에서 규정 반대 | 2019, 2020년 협의 |
| 3 | 공기업 | SOC | 인천국제 공항공사 | 〃 | 2021년부터 협의 |
| 4 | 공기업 | SOC | 한국공항공사 | 〃 | 2023년 협의 |
| 5 | 공기업 | SOC | 인천항만공사 | 〃 | 2023년 사무국장과만 협의 |
| 6 | 공기업 | SOC |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 노동조합에서 규정 반대 | 2023년 협의 |
| 7 | 공기업 | 산업진흥 | 한국마사회 | 〃 | 2023년 협의 |
| 8 | 공기업 | 산업진흥 | 한국전력기술 | 〃 | 2021년부터 협의 |
| 9 | 위탁집행형 | SOC | 한국가스 안전공사 | 〃 | 2017, 2020년 협의 |
| 10 | 위탁집행형 | SOC |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 | 2020, 2021년 협의 |
| 11 | 위탁집행형 | SOC |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 〃 | 2023년 사무국장과만 협의 |
| 12 |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 한국관광공사 | 〃 | 2023년 협의 |
| 13 |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 | 2021년부터 협의 |
| 14 | 위탁집행형 | 국민복지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 2021년부터 협의(단체교섭 등 총 18회) |

| 연번 | 구분 | 유형 | 공공기관 | 미반영 사유 | 노동조합 협의 여부 |
|---|---|---|---|---|---|
| 15 | 공기업 | 에너지 | 한국남부발전 | 노동조합과 협의 예정 | 2023년 임단협 예정 |
| 16 | 공기업 | 에너지 | 한국동서발전 | 〃 | 2023년 임단협 예정 |
| 17 | 공기업 | 에너지 | 한국중부발전 | 노동조합 협의 미실시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반영) | |
| 18 | 공기업 | SOC | (주)에스알 | 규정을 인지하지 못함 | |
| 19 | 공기업 | 산업진흥 | 한전KPS(주) | 노동조합 협의 미실시(내부경영평가편람에 반영) | |
| 20 | 위탁집행형 | SOC | 국가철도공단 | 노동조합 협의 미실시 | |
| 21 | 위탁집행형 | SOC | 국토안전관리원 | 〃 | |
| 22 | 위탁집행형 | SOC | 도로교통공단 | 노동조합 협의 미실시 (명확한 정부지침이 필요) | |
| 23 | 위탁집행형 | SOC | 한국국토정보공사 | 노동조합 협의 미실시 | |
| 24 | 위탁집행형 | SOC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
| 25 |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26 |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 한국연구재단 | 〃 | |
| 27 | 위탁집행형 | 산업진흥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
| 28 | 위탁집행형 | SOC | 한국농어촌공사 | 노동조합과 협의 예정 | 2023년 임단협 예정 |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신기술·특허공법 부당공고 및 다시 공모하는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하여 경쟁 제한**

**소 관 기 관: 한국수자원공사**

**조 치 기 관: 한국수자원공사**

내 용

**1. 업무 개요**

**한국수자원공사** ㉮부문 ㉯사업본부 ㉮사업처(이하 "㉮사업처"라 한다)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개발사업(이하 "시화MTV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22년 9월 시화MTV사업 부지 내 **학교 및 주택가의 소음저감을 위하여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에 **기존공법 대비 7dB 이상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우수한 공법 (자재)을 반영하여 적용**(예산 3,516백만 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처**는 2022. 9. 21.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공법 선정을 위하여 "7dB 이상 저소음 포장공법" 공고문의 공모참가자격에 '저소음 포장공법에 대한 신기술(NET)·특허 개발자(권리권자)로서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7dB 이상 소음저감에 대해 증빙 가능한 공공기관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기한 내 제출 가능한 자'로 작성**하여 ㉮부문 ㉶처(이하 "㉶처"라 한다)에 특정공법 기술제안 **공모**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사업처**는 2022. 10. 17. **재공고한 공모 접수결과**를 ㉶처로부터 받아, 같은 해 10. 25. 기술제안 공모에 참여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 **3개 업체의 공모 제출서류**에 대하여 **참가자격 증명서류, 실적, 신기술인증서 등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를 포함한 2개 업체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부문 ㉷처(이하 "㉷처"라 한다)의 특정공법심사위원회에 공법심사를 요청하였다.

이후 **㉷처는** 제안가격 및 내구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기능성 등 기술평가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22. 10. 27. **㉮㉮를 기술제안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u>**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u>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지정 내역」**(제2022-24호, 2022. 4. 1. 시행, 이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처에서 제2022-63호로 재공고한 ‘7dB 이상 저소음 포장공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공법(자재)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세부품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처는** 시화MTV사업 공고문의 공모참가자격에 신기술·특허공법 등 소음저감에 필요한 요건 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가능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공고문의 공모참가 자격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법률자문 등을 거쳐 **공고를 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시화MTV사업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자인 **㉮사업처 ㉯과 대리 D와 차장 E는** 2022. 9. 21. 공고문을 작성하여 ㉰처에 공모를 요청하면서 '7dB 이상 저소음 포장공법' 공고문의 공모참가자격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기한 내 제출 가능한 자'로 명시하면서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이 건 **공모사항에 필요하거나 적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표준 서식**(「특정공법·자재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예시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였고, **㉮사업처 사업처장인 F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사업처 ㉯과 대리 D와 차장 E는** 공모 신청기간 후 ㉰처로부터 2022. 10. 17. 공모 참여업체의 제출 서류를 통보받아, 참가자격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건 공모사항은 특허나 신기술로 7dB 이상의 저소음 효과가 있는 공법(자재)에 대한 공모이므로 일반적인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 301115970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처 ㉯과 대리 D와 차장 E는** 이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을 거쳐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등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에 적용될 자재의 수급, 품질 및 시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법 참여업체의 직접생산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참가자격에 명시된 조건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공장등록증'으로도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업처장인 F에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공장등록증'으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업처장 F**도 공모참가자격 인정여부는 **㉮사업처 소관인데도 ㉰처 등과 협의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단순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를 포함**하여 특정공법심사위원회에 공법심사를 요청하는 문서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이 건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없을 뿐 7㏈ 이상의 저소음 포장공법에 관한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고문상의 **공모참가 자격과 달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자로 선정**(낙찰액 2,342백만 원)됨에 따라 공모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선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해당 공법 선정자에게 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를 하였으며, **재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시화MTV사업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무 감독자인 **㉮사업처 ㉱과 대리 D는**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이 건 공모사항인 '7㏈ 이상 저소음 포장공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공고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명시한 취지**는 **사업에 적용될 자재의 수급, 품질 및 시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법 참여 업체의 직접생산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므로, 국가계약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으로 대체함으로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여 업체들에 억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공고문의 참가자격에 명시된 증명서류**는 **참가자격 제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석**되어야 하고, 잘못 공고된 내용으로 인해 당초 참여 가능했을 경쟁업체의 참여가 부당하게 제한받았을 수 있으며, 참가자격과 관련한 민원 유발 및 선정 취소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D의 소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기술·특허를 요구하는 공모 시 **필요하지 않은 증명서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D, E, F)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이 자료는 도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